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 운영 방안

수산정책연구실

| 연구책임자 |

- 김대영 연구위원, mobydick@kmi.re.kr 051-797-4541

| 연구진 |

- 안지은 연구원, an2412@kmi.re.kr 051-797-4583

| 감리위원 |

-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jkryu@kmi.re.kr 051-797-4532

• 목 차

요약	0
I. 머리말	3
II. 현행 수산사업 현황 및 문제점	5
III. 수산 전담기관의 지정 필요성	5
IV. 농업분야 사례 분석	12
V. 수산 전담기관 지정 · 운영 방안	9
VI. 정책제언	9
참고문헌	4
[부록 1] 전담기관 지정 · 운영에 관한 고시(안)	3
[부록 2] 수산부문 세부사업 현황(2016)	0
[부록 3] 주요 수산사업 참여기관 현황	3

요약



-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은 담당부서별·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운영 및 예산분배에 한계가 있음
 - 단발성 개별 사업운영으로 유사사업 중복 및 일부 기관의 보조사업 예산 집중, 사업운영상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측면에서도 단기적 사업 수행으로, 조직관리 및 운영, 전문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외 수산업 환경변화로 새로운 수산업·어촌 정책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정책 수립 및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수산정책은 과거 생산·어촌개발 중심에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이행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적 수요 확대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는 유사 조직·기능 개편 및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정책사업 수립·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수산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연계사업의 통합관리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함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존에 교육, 문화, 정보 업무를 수행해 오던 3개 전문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 정책 지원 및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신 가치 창출, 고객 맞춤형통합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이루고 있음



-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은 현 수산업계의 현실과 수산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과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가며, 최종단계에서는 수산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관련 고시 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수산사업 기관을 활용하면서 각 기관별 기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사업 특화를 통해 전담기관의 통합을 추진함
 -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수산정책 지원 및 전담기관 업무 총괄, 수산정책 기획·전략 수립, 신규 사업 발굴 등 전담기관의 기능 확대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산사업 및 정책지원을 통합한 '(가칭)한국수산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함
 - 새로운 통합 전담기관 설립은 기존 전담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별 고유역할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대응 등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함



I. 머리말



- 지금까지 수산정책은 생산 및 어촌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글로벌 수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국내 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어촌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수산업·어촌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정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질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속에서 내수중심형 단순 생산·가공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식품·유통 등을 연계한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이 필요함
- 이러한 수산업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2015년 6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또한 동 법에 근거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음
- 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이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어촌의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산사업을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중복성, 전문성의 한계가 존재함
- 한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수산정책 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현안분석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지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현행 수산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농업분야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여 수산 전담기관의 지장운영 방안을 단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전담기관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검토함

II. 현행 수산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수산사업 추진 현황

① 수산사업 구성

□ 해양수산부에서는 2007년 해양수산사업을 프로그램 예산체도로 도입하면서 각 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하위 단위사업·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사업 프로그램은 수산·어촌(이하 수산으로 함), 해양환경, 해운·항만, 물류등 기타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부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신설 및 통·폐합을 거쳐 2016년 현재 10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음

<그림 2-1> 해양수산부 수산부문 프로그램 현황

2013	2014	2015	2016
수산경영지원	수산경영지원	수산경영지원	수산경영지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어촌어항개발	어업지도관리	어업지도관리	어업지도관리
수산연구	어업구조조정	어업구조조정	어업구조조정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어촌어항개발	어촌어항개발	어촌어항개발
어업지도관리	수산연구	수산연구	수산연구
어업구조조정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원양협력	원양협력	원양협력	원양협력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품질관리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신설)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신설)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수산물품질관리정보화

주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 내 '어업질서확립', '어업지도정보화', '어업지도선건조 및 운영' 사업을 '어업지도관리'로 별도 분류했고,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 내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어업구조조정'으로 별도 분류함

자료 :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각 연도

□ 수산사업은 53개 단위사업과 9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¹⁾

- 2016년 기준, 수산부문의 단위사업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은 부록 2에 정리하였음
- 연도별 사업 분류 체계 상, 수산행정 프로그램(단일사업)은 제외함

 <표 2-1> 2016년 해양수산부 수산부문 사업 구성

(단위: 개)

구분	주요 내용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산경영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 보험 · 교육 관련 사업	13	25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회복 · 조성 · 관리와 어업 · 양식업 지원 및 육성 관련 사업 · (어업지도관리)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 · 서해 어업 관리단의 운영 · 지원 사업 · (어업구조조정) 어선감척 및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11	24
어촌어항개발	어항 유지 · 보수 · 개발 및 어촌관광 지원 사업	8	10
수산연구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과학원 운영 · 지원 예산 사업	3	5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산지 · 소비지를 모두 포함한 유통 지원 사업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 지원 사업	8	14
원양협력	원양어업 지원 및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3	6
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 관련 예산 지원 사업	4	5
수산물품질관리	수산물 · 수산식품 위생관리 및 수출입 수산물 안전성관리 사업	1	2
수산물품질관리 정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화 예산 사업	1(단일)	
수산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 기술 연구 · 개발 사업	1(단일)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참고 작성

1) 각 사업별 내용은 장영수 외,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해양수산부, 2015.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 · 보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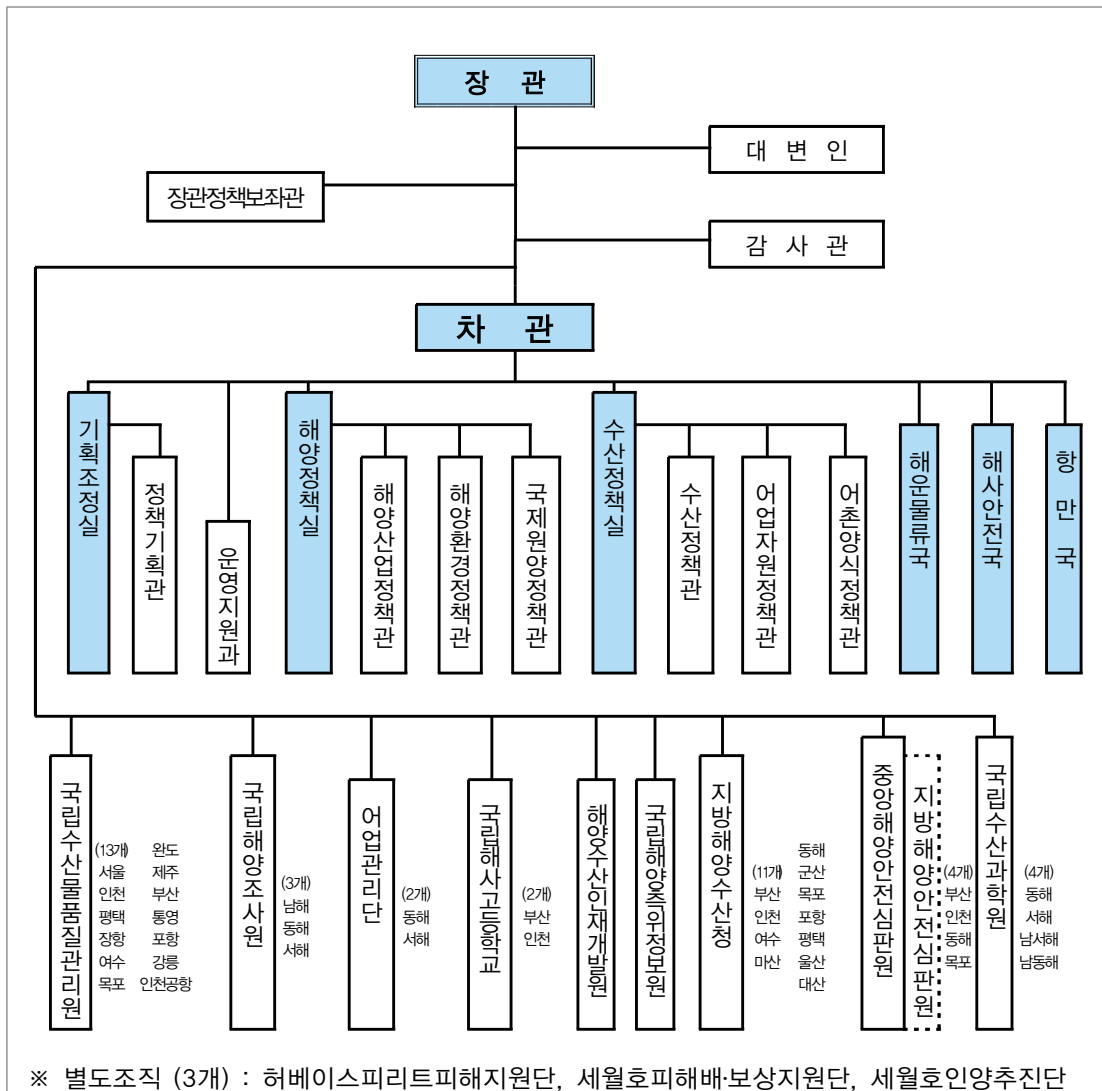
② 수산사업 추진체계

□ 해양수산부는 본부 외 72개 소속기관 및 시·도·자치체, 15개 산하공공기관 그리고 기타 민간기관·기업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조직현황

- 본 부 : 1차관 3실 3국 9관(43과)
- 소속기관 : 72개(1차 21개, 2차 42개, 3차 9개)
- 책임운영기관 : 3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그림 2-2> 해양수산부 조직도



자료: 해양수산부, 2016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2016.01.

- 해양수산부 산하공공기관 : 15개(공기업 5개,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6개)
 - 이 중 직접적인 수산관련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수산자원조성)’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어항 개발, 정비, 홍보 등)’ 2곳에 불과함

 <표 2-2> 해양수산부 산하공공기관 현황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시장형 공기업(1개)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4개)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개)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업연구원	• 해양인력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조성, 종묘방류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 기타 공공기관(8개)	
(주)부산항보안공사	• 부산 북항 경비·보안 업무
(주)인천항보안공사	• 인천항 경비·보안 업무
항로표지기술협회	• 등부표 제작 및 항로표지 장비 연구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한국어촌어항협회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도와 항해서지 제작보급 등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자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산하 공공기관 현황)(2016.07.20. 검색 기준)

- 한편, 수산사업은 세부사업별 성격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관부서가 배정되어 있으며, 예산 지원 방식 및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수행하는 주체가 정해지며,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행정·운영을 담당하는 별도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 수산사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중 다수 사업자가 복합적으로 수행함
 - 2016년 기준, 해양수산부 자체 수행 사업 비중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보조사업 및 민간단체 위탁사업 비중도 각각 약 20%로 높은 편임
 - 정부 및 지자체, 민간단체가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약 30%를 차지함

 <표 2-3> 2016년 해양수산부 수산부문 세부사업 수행주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직접+지자체	직접+민간	지자체+민간	직접+지자체+민간
개수	25	21	19	7	12	7	4
비중	26.3	22.1	20.0	7.4	12.6	7.4	4.2

주 : '직접수행' 은 해양수산부 소속 · 산하기관 수행 사업을 포함함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참고 작성

- 수산사업의 세부사업별 수행기관은 단일기관에서 단독 수행하는 경우와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나뉨
 - 용자, 보험,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같은 금융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직접수행 및 수협중앙회와 같은 금융기관 수행 비중이 높음
 - 주요 수행기관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어촌어항개발 및 자원관리 · 평가, 과학적 조사, 기술개발, 수산물 검사 · 검역, 전문인력 양성 등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전문기관 수행 비중이 높음
 - 주요 수행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어항개발), 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자원관리 · 평가), 국립수산물과학원(기술개발 · 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사 · 검역),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인력양성)
 - 그밖에 국제협력, 홍보 · 소비촉진, 어업인 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의 사업은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수행기관 :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협중앙회 등

2. 수산사업 참여기관 현황

□ 현재 수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약 20여개로, 대부분 해양수산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수산·식품 관련 정부부처 소관 기관임

- 수산사업 참여기관은 정부부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과 특수·사단·재단 법인 등 민간단체,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됨

 <표 2-4> 2016년 해양수산부 수산사업 참여 기관 현황

연번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사업 수
1	소속기관(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3	책임운영기관(1)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10
4	준정부기관(6)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3
5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7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
8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	1
9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1
10	기타공공기관(4)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7
11		(국조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12		(미래부) 한국식품연구원	1
13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14	특수법인(1)	(해양수산부) (특)한국원양산업협회	4
15	사단법인(7)	(해양수산부) (사)한국수산회	6
16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무역협회	3
17		(해양수산부) (사)한국관상어협회	1
18		(해양수산부) (사)해외어업협력센터	1
19		(해양수산부) 대한수산물질병관리사회	1
20		(해양수산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
21		(해양수산부) 한국생선회협회	1
22	재단법인(1)	(농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1
23	협동조합(1)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22

자료 : 2016년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 자료 참고 작성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우, 법적근거 하에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전문성 및 일관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민간단체(법인 또는 기업 등)의 경우에도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5~6개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관의 정체성 및 전문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음



- 특히,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한국수산물, 수협 등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각 분야별로 서로 연관된 사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다수 담당하고 있음

□ 수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매년 해양수산부의 지정 및 사업자 공모를 통한 일반 수의계약 또는 법·제도적 근거에 따른 위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수산사업 수행 현황 기준으로, 수의계약과 위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비율은 각각 50% 수준임(참여기관별 성격 및 세부 사업내용은 부록 3 참고)
- 이 중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운영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법 조항에서 사업수행 기관명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업환경개선 및 어촌어항개발사업(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률」에 따른 수산관측사업(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 등 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 사업(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임

3. 현행 수산사업 추진 상 문제점

□ 수산사업 추진에서 현재와 같은 부서별 사업 계획 수립·추진시스템 하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운영 및 예산분배에 한계가 있음

- 수산분야 전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 사업기관별 예산 배정 현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유사사업 중복 추진 및 일부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 집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법 규정에 따라 지정 위탁기관이 없는 사업의 경우,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이 요구되어 행정운영 상 효율성 및 사업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중·장기 추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분야의 특성 상, 매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불필요한 인력·비용·기간 등이 소요되어 행정업무 상 효율성이 저하됨
- 중도 사업 수행기관 변경으로 기존 사업내용 및 기간 등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초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

- 기존 사업 수행 기관의 노하우 및 전문성 등이 단절되어 사업 내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됨

□ 해양수산부 정책방향 및 중요도에 따른 사업 · 예산 편성으로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자원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수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과거 수산분야 정책방향은 수산자원조성 · 관리 및 어촌어항 개발, 어민복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수산업 기반 조성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 및 행정 체계, 관련 전문기관 등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 해양과학기술진흥원(기술개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자원관리), 한국어촌어항협회(어촌, 어항개발), 한국원양산업협회(국제협력) 등과 수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등 개별 법적근거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수산물유통 혁신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수출확대, 수산물 품질관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분야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 · 인력 육성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함
 - 특히, 수산물 수출확대 및 어촌여건개선, 가치확산 · 홍보 사업 등은 한국수산물,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수협 등 여러 민간기관에서 매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관리 및 조직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표 2-5〉 기관별 업무 영역별 수산사업 수행 현황(2016년 기준)

구분	기관명	사업	조사 연구	국제 협력	산업 육성	위생· 품질관리	유통 효율화	홍보· 소비촉진	교육· 인재양성	정보화	기술 개발	아존어항 개발	자원 관리	환경 개선	어민 복지	기타
준정부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3										1	1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									2					
기관	한국수산업관리공단	1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1					
	한국어촌어항협회	7	1					1				1	1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5													
기타공공 기관	한국식품연구원	1			1											
	농업정책보급응용원	1														
특수법인	(특)한국원양산업협회	4		4												
	(사)한국수산업회	6		1		1		2	1			1				
시민법인	한국수산업역협회	3	1	1				1								
	(사)한국관상어협회	1														
	(사)해양어업협력센터	1		1												
	대한수산물병관리사회	1				1										
재단법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											1			
	한국생선사회협회	1				1										
협동조합	농어촌희망재단	1							1							
	수협중앙회	22		1			5	3	1			2		2	7	1
합계		7	8	2	3	5	10	6	0	3	5	4	6	7	1	

주1 : 법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가능 범위 내 속하지 않는 정부부처 소속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책임운영기관(국립수산물과학원)은 제외함

주2 : 음영부분은 각 기관별 주요업무 분야를 뜻하며, 숫자는 2016년 현재 해양수산부 수산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별 수행사업수를 의미함

주3 : 붉은색 박스는 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업무 영역을 구분한 것임

자료 : 2016년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작성



Ⅲ. 수산 전담기관의 지정 필요성



1. 수산정책의 대상 및 수요 확대

□ 지금까지 수산정책은 생산 및 어촌개발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수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국내 수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수산업·어촌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시대별 수산업·어촌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대) 식량자급 및 수출 → (1990년대) 어업협정 체결 및 감척 등 어업관리 → (2000년대) 어업인 삶의 질 → (2008년)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 (2013년)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로 이어짐

<그림 3-1> 국내 수산업·어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



자료 :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016. 04.

- 새로운 수산업·어촌 정책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 대상·범위 확대 및 질적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업경영채산성 제고, 지속적인 수요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 내수중심형 단순 생산·가공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식품·유통 등 연계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중심 산업구조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에는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계획에는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지 정책 목표와 20대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2015.06.22. 제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림 3-2> 2016~2020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자료 : 해양수산부, 제1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2016. 04.

□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립 · 운영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계 수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수산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새로운 수산정책 방향에 따른 정책지원 수요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시장개방 및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협력 및 국내외 정보 조사·분석, 수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수산물 안전·품질 관리 지원, 수산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인 육성·공급, 어촌 발전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문화·가치창출, 홍보 및 정보화 지원, 수산 기업을 포함한 수산업 전후방 기업 육성·지원
-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 정책 지원 및 수산업 진흥·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함

2. 수산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련 제도 마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수산업의 특성 및 독자성을 반영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신설됨에 따라 수산분야 독자적인 법제도가 성립됨
 -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에서는 농업·수산업·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산업분야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관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발전 및 진흥을 포괄하는데 한계를 보임
 - 또한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현행 법률에서는 수산업의 정의 및 수산업 지원 대상 등을 어업 생산 또는 어업인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유통-가공 등 연관산업 전체를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종합·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산관련 법·제도 체계화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수산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및 정책 추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제정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5.12)에 따라 수산정책 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함
 - 동 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전담기관 지정·운영, 예산 지원 등의 근거 및 전담기관 지정 범위, 업무 수행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효율적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의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3.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4.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5.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6. 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7. 수산업·어촌에 관한 홍보·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8. 수산업·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지원
 9.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육성
 10. 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수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수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 영역확대가 필요함

- 한·중 FTA 체결 및 TPP 등 급변하는 글로벌 수산 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는 수산물유통 혁신, 수산식품산업, 수산물 수출 확대 등의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영역확대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장·설립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현행 수산사업 추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상 비효율성 및 사업 유사·중복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수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함
 - 개별 사업 추진 및 매년 사업자 선정 등 현재 수산사업 추진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복 사업 운영 및 사업내용 상의 전문성과 연속성 미비, 예산·인력 등 비효율적인 행정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수행해 왔던 수산 관련 업무의 이관이 필요함
 - 농정원은 인적자원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가치 홍보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 중에서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화에 대해서도 수행하고 있는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성립으로 수산업과 관련된 식품산업 업무의 이관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수산분야는 기관별 사업 수행체제로 농정원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육성·설립 및 인력·인프라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함

IV. 농업분야 사례 분석



1.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설립·운영 사례²⁾

① 기관 설립배경 및 절차

- 농림수산물부는 2011년 농업인재개발원(ADHI), 농촌정보문화센터(CRIC), 농림수산물정보센터(AFFIS)를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신설함
 - 기존 3개 기관의 주요 기능(교육, 문화, 정보)을 통합한 전담기관 신설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시너지 효과 기대

<표 4-1> 농정원 통합 대상 기관별 운영 및 조직 현황

구분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속	재단법인 (기타공공기관)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부설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총리실)
연혁	1992년	2009년	2004년
조직	사장, 1실, 2단, 2부, 8팀	원장, 3팀	소장, 1실, 6팀
인력	정원 49명(현원 58명)	정원 16명(현원 22명)	정원 16명(현원 16명)
지원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도농교류법 등
지원방식	국고보조(97%) 자체수입(3%)	국고보조(100%)	자체수입(86%) 출연금(14%)
'12년 예산	12,549(백만 원)	26,307(백만 원)	10,562(백만 원)
주요기능	정보 (정보인프라구축 및 서비스 제공)	교육 (교육 및 평가인증)	문화 (가치·소비 홍보)

자료 : IDE,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조직설계 및 인력운영 효율화방안 도출 연구, 2012.02. 참고 작성

□ 추진배경

- 인적자원육성 및 정보화 촉진, 농어업·농어촌 홍보, 경영체 역량강화 등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전문적·효율적 시스템 구축 필요

²⁾ 본 현안분석에서는 '농정원'을 사례를 본 것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전담기관 지정·운영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합신설을 검토하기 위해서임

- 농식품분야 대내외적 변화 대응 및 농어업 역량 강화, 농식품 수요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등 중장기적 지원 강화 필요
- 여러 기관에 산재·중복되어 있는 핵심기능 통합으로 사업수행 종합·체계화 필요
- 현 수행기관 법적근거 마련으로 사업 추진의 한계점 극복

□ 통합절차

- 기존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3개 기관의 기능, 직무,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농정원의 핵심 기능 도출, 효율적인 조직 구조 설계

2 기관 일반현황³⁾

□ (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 (설립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1.11.22.]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참고 작성(2016.07.18. 검색기준)

□ (설립목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

□ (연혁)

- 2011. 11. 농정원 설립 근거법 마련(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 2012. 5.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설립
- 2013.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4. 7. 귀농귀촌종합센터 업무 개시
- 2015.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산부분 삭제)

□ (주요기능 및 역할)

 <표 4-2> 농정원의 주요기능 및 역할

구분	세부내용
교육 (인력양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 농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정보화	○ 농업·농촌의 정보화 촉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자거래 및 코드표준에 관한 사항 ○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 농림수산물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홍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배포 및 수출입 지원 ○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국제협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기타	○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또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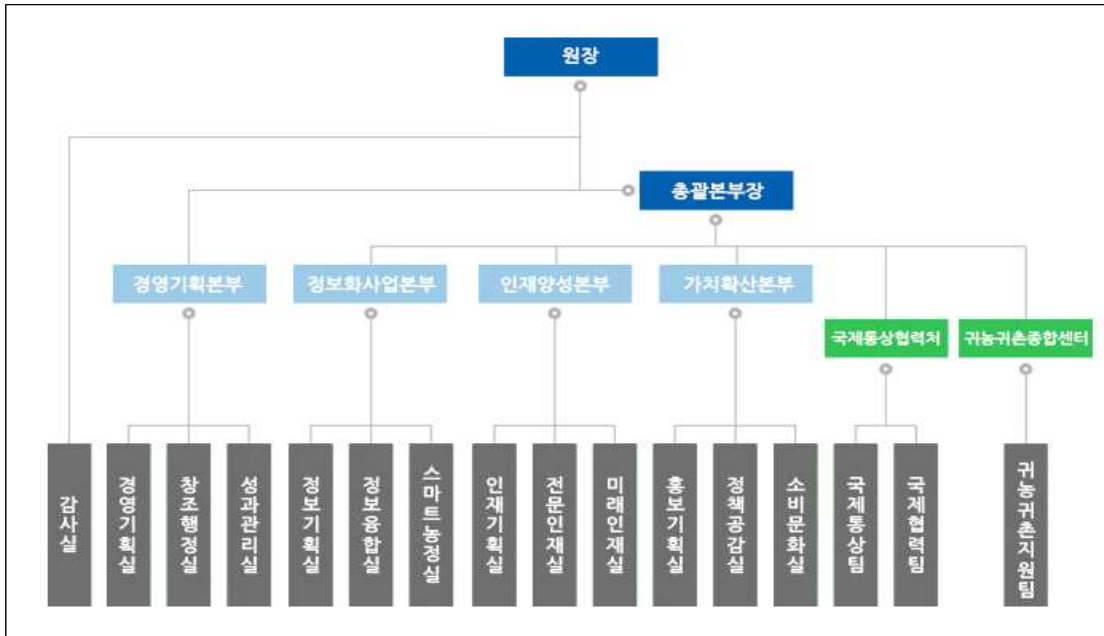
□ (경영목표 및 전략)

- (미션) 농업 경영 혁신과 농촌 가치 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
- (비전)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
- (핵심가치) 혁신, 협업, 소통, 고객행복

- (전략목표) 농업인의 경쟁력강화, 농업의 생산성 증대, 도노상생 기반강화, 글로벌 환경 대응능력 강화, 고객행복 경영체계 실현

□ (조직 및 인원) 4본부 1처 13실 3팀으로 구성 / 정원 126명 (현원 103명)⁴⁾

<그림 4-1> 농정원 조직 현황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2016.07.18. 검색기준)

3 기관 운영현황

- (주요 사업) 농정원은 매년 5개년 단위의 중기 경영목표⁴⁾를 수립하여 기관의 전략 목표와 농림축산 식품부 관련분야 주요 정책 등을 반영한 전략·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농정원의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농업인력 양성 기반 강화
 - (농업 생산성 증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농식품 지식정보화 확산, 스마트 농정지원

4) 2016.06.30. 기준

- (도농상생 기반 강화) : 농업/농촌 가치공감대 확산, 농업미래성장산업화 인식 창출, 우리 농식품 소비 확산
- (글로벌 환경 대응능력 강화) : 농식품 글로벌 통상정책 협력지원, 농식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고객행복 경영체계 실현) : 전략경영체계 선진화, 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강화
- 2016년의 주요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전문분야(교육, 정보, 문화)별로 사업 및 예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표 4-3> 2016년도 농정원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16년 예산	주요내용
정부 보조 사업	인적자원 육성 (교육)	21,438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GAP전문인력양성교육, 쌀산업선도경영체교육, 농업경영컨설팅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 후계농업경영인교육지원, 기능성양잠기술교육과정 등
	가치확산홍보 (문화)	19,282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운영 및 콘텐츠 개발, 6차산업 우수사례 및 제품홍보, 도시농업활성화, 국가인증농식품홍보, 소비정보교류활성화 등
	정보화 촉진 (정보)	15,704	농업정보이용활성화, 농식품소비정보망이용활성화,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생명자원통합DB구축, 농식품ICT융복합촉진, 농식품ICT융복합확산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운영,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등
	국제통상지원	3,379	국제통상지원, FTA해외정보조사,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협력, 한-뉴질랜드FTA농업협력 등
	소 계	59,803	
기관고유사업		1,162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조사, 농업교육패널조사, 매력적인 농업 일자리 발굴 및 확산, 농업법인 현황조사 및 분석 등
수탁용역사업		75	농식품 안전유통을 위한 위해인자 신속관리시스템 개발, 원예작물 실시간 원예전염병 감시예측시스템 개발, 농식품 IT·SW 융합지원센터,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등
합 계		61,040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2016.07.18. 검색기준)

□ (예산 현황) 농정원 예산은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기타사업(수탁용역, 자체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2년 기관 설립 이후, 정부지원 예산 및 기타 사업 수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정부 출연금 및 수탁용역사업 예산은 2012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 9배 이상 증가함

<표 4-4> 농정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부출연금	1,109	7,919	10,576	10,848	11,163
정부보조금	42,011	43,607	53,649	63,524	59,803
수탁용역사업	539	520	3,781	4,352	75
자체수익사업	139	110	54	12	
기타	13	22	14	7	10
총계	43,865	52,179	68,073	78,743	71,051

주 : 2016년 자료는 농정원 추정 수치 예산임

- 각 항목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농정원은 정부보조사업 수행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 고유사업 운영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보조금 비중이 총 예산의 약 85%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 비중은 설립 초기 2.5%에서 최근 약 15%로 증가함

2. 시사점

- 농업의 경우 유사 조직·기능 개편 및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 수립·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수산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 유사 사업·기능 정비 및 수산정책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별 사업·조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함
- 농업의 조직·기능 개편은 법에서 신규 전문기관 설립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기관 통합 및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법적·정책적 당위성 및 대내외적 실효성이 높음
 - 수산분야는 수산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수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수행업무 승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기관 전문성 확립, 기능 확대, 독자적인 예산·사업 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정원은 기존 농식품분야의 3개 전문기관을 통합한 신설 기관으로,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정책지원 및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신 가치 창출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농정원은 법적 근거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농식품분야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및 정책 추진방향에 따른 신규 사업 개발·기획기능을 강화시킴



-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교육, 문화, 정보 3가지 핵심기능 위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됨
 - 3개 기관의 전문성 및 수행 기능 분석을 통한 강점 및 취약점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핵심역량 공유로 업무 전문성을 제고시킴
 - 그 외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기존에 미약했던 분야 보완을 위한 신규업무 반영으로 기관 기능을 확대함(국제협력, 농수산물 관련 지식·산업재산권 보호)
 - 농정원을 통해 일원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분야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킴
- 농정원 사례를 바탕으로 수산 전담기관 지정·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산업 진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 수산분야의 정책적·국민적 수요와 기대를 반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신규 사업 발굴로 전담기관 고유 역할 및 목적을 부여하여야 함
 - 현 사업별 관리체제에서 유사·연계 사업 통합 관리 운영 체제 구축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위탁관리 등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확대, 전문 인력 확보·양성, 시설·설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음



V. 수산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



1.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으로 전담기관을 통한 수산정책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수행 체제가 인정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 전담기관의 법적 성격 및 관할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정절차 및 지정·운영상의 기준 설정이 필요함
 - 법에 따라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산업 관련 학교, 비영리 법인이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또한 전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연구, 국제협력, 국제협정 체결에 따른 환경 개선, 안전·품질관리, 소비촉진, 교육·인력양성, 정보화, 홍보, 관련 산업·기업 육성, 기타 위탁사업 등 10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수산분야 전담기관 지정은 현 수산업계의 현실 및 수산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볼 때,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산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 유사한 성격 사업을 여러 수행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 기관별 전문분야 설정 및 기능·업무부여, 이에 따른 조직 재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 따라서 각 업무 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통합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 기관의 반발 및 운영 상의 시행착오 등 통합·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음
 - (1단계) 기존 수산사업 기관 활용
 - (2단계) 기관별 사업 특화를 통한 통합 전담기관 지정
 - (3단계) 수산사업 및 수산정책지원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

- 전담기관 지정·운영은 궁극적으로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정책 수요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별사업 추진체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단계에서는 기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합하는 새로운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함
 - 농업분야의 농정원 설립 사례와 같이 새로운 전담기관 설립은 업무영역 승계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으로 기관의 기능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임

2.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발전방안

① 기존 수산사업 기관 활용

- 전담기관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 업무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 수산사업 추진체계에서 단기간 내 기존 수행기관들의 기능 재정비 및 통·폐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법제도 개편에 따른 무리한 사업·기관 통합은 행정상의 혼선을 야기하고, 일부 사업 및 담당기관 공백이 나타나 전체 수산정책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산사업 수행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문성과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각 기관별 수행사업 기능에 따라 기관 고유의 특수성을 부여해 나감

① 추진방향

-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산정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전담기관의 목적 및 지정기준, 신청·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전담기관의 정의 및 법적성격을 명시하여 지정 목적을 명확히 함
 -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방법, 평가·지정 방법을 명시하여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업무처리에 혼선을 최소화함
 - 전담기관 운영 방법 및 지정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고시를 통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법 규정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현재 수산업계는 수산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기관의 기반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전담기관 신청·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수산정책 수행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고 향후 통합수산정책 지원이 가능한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고시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해양수산부 및 사업 수행기관의 행정·조직 운영의 개편 방안 수립도 이루어져야 함
 - 유사·중복사업 정리 및 기능 중심의 수산사업 분류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 주무부처 등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업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 하여 사업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함
 - 연구·조사 및 인력양성, 홍보, 국제협력, 재정·경영지원 등 각 사업별·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 담당업무의 지정으로 사업내용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감
 - 각 기관 고유 업무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행정체계 개편으로 기관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밀착형 사업운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을 개선시켜 나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전담기관 지정과 함께 단발적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사업운영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운영 및 사업수행의 안전성·효과성을 극대화 함

②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규정(안)

- (정의) 전담기관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함
- (법적성격) 전담기관은 각각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산관련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수산업 관련 연구인력 및 시설을 갖춘), 「민법」에 따른 비영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기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는 아래와 같음

☞ <표 5-1>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 업무

구분	주요임무
조사·연구	•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국제협력	• 수산분야의 민간 국제협력 •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산업육성	•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육성
위생·품질관리	•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유통효율화·소비촉진	•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교육	• 국내외 수산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정보화	• 수산업·어촌에 관한 홍보·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홍보	• 수산업·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지원
기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자료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재구성함

□ (지정 기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수산업·어촌 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 시설·장비, 관련 업무 추진 실적 등 수산정책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

☞ <표 5-2> 전담기관 지정기준(안)

구분	세부내용
인력	•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분야 정책지원 실적 및 경험을 갖춘 것 • 전담인력 정규직 3인 이상을 보유 할 것
조직	• 수산분야 정책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실적	• 최근 3년간(최소) 수산업 관련 사업·조사·연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시설·장비	• 수산분야 정책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지정·운영 절차) 전담기관은 지정 신청, 평가, 선정, 사업 계획 수립, 사업운영, 성과평가체계로 매년 추진

○ (신청) 전담기관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함

 <표 5-3> 전담기관 신청 서류

구분	세부내용
행정사항	- 지정신청서(서식 지정)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기관관련 사항	- 수산 관련 업무수행 실적(최근 3년) - 책임자 이력서 - 시설·장비 보유 현황 - 수산 전문인력(정규직)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사업계획서(서식 지정)

- (평가 및 지정) 해양수산부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확인·조사 절차를 걸쳐 전담기관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정서를 교부함
 - 해양수산부는 전담기관 선정·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필수 시설·조직 확보, 관련 사업수행 실적 등의 정량적 요소와 사업수행 계획 등의 정성적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수행 → 성과 평가 → 익년도 사업 반영’ 체계로 운영함
- (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효율성 및 여건 변화, 조직 운영·체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지정 기간을 설정함
 - 단, 전담기관의 매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일정 기준이 이하인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사업별 통합 전담기관 지정

① 추진방향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규정한 본래 취지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정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별 사업특화 및 그에 따른 단계별 기관 통합을 통해 전담기관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함
 - 수산사업 성격에 따른 각 기관별 주요 수행사업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한 기관 통합으로 수산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체계적인 전담기관의 기관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해양수산부 소관 기관·단체 개편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주요 분야별 전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각 사업별 연계성을 고려한 기관 통·폐합 등 체계적인 수산사업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조직·예산 운용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함
- 이러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산분야 정책사업 수행체제를 개편하여 사업성과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 수산정책 상의 취약분야 및 신사업 발굴이 가능하게 됨

2 추진내용

□ (통합대상) 단계별 사업·기관 통합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법인, 수산업협동조합, 대학 등 수산관련 학교로 정함

□ (통합방향) 기관 통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기관 업무 분야별로 추진하되, 각 사업별 성격 및 사업수행기관의 특성, 현행 체제의 장단점 등을 반영한 현행 체제 유지 또는 기관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취약한 분야는 신규 전담기관 지정과 함께 기능강화 방안이 추진함

○ 현행 체제 유지

-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정책사업 수행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분야로, 각 분야별 주요현안 조사 및 기본자료 수집·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해 나감
- (위생·품질관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위생·품질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부분 관할하고 있으며, 수산물이력제 및 식품 위생 관련 자격시험 등 일부 사업만이 특정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유통효율화) 수산업 관련 유통 관련 사업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체제를 유지함

○ 기관 통합

- (국제협력) 현재 국제협력 사업은 대부분 ‘한국원양산업협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주변국 민간협력 사업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등은 다수의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중·일) 어업질서 협력 관련 사업과 원양어업 협력 사업을 구분하고 이를 전담할 사업수행기관 지정·통합이 필요함



- (홍보·소비촉진) 수산물·수산식품 소비촉진 및 수출 진흥 및 어촌·어항 홍보를 포함한 수산분야 가치 확산 사업의 경우, 다수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내와 국외 추진사업을 구분하여 이를 전담할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통합해 나감
- (교육·인재양성) 교육 및 인재양성 사업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상 필요한 경우 개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교육 대상에 따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생산관련 교육과 유통·가공·소비·수출 등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구분하여 각각의 전담기관 지정·통합이 필요함
- 기관지정 및 기능 강화
 - (산업육성) 수산분야 기업육성에는 자금지원 관련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이를 전담할 기관 지정이 필요함
 - (정보화)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에서는 각 기관별·사업별 관련 정보 수집·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정보화가 진행되지 않은 분야가 다수이며 정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수산 분야 통합 정보시스템’ 추진 상황도 여전히 미진한 실정으로, 향후 정보화 관련 정책사업 강화 및 이의 전담기관을 지정해 나감

③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

① 추진방향

- 단계별 수산사업 전담기관의 최종 단계로서 수산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기관 설립(또는 지정)을 통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산정책사업 운영에 효율성 및 체계성을 강화함
 - 통합 전담기관은 ‘(가칭)한국수산업진흥원’으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10개 분야 전담기관의 업무 전체를 관할하고, 수산정책 기획·전략수립, 정부보조사업 수행·관리, 신규 사업 발굴 등 수산업·어촌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총괄 지원기능을 담당함
- 수산 정책사업 통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 전담기관 설립 관련 법 개정 및 세부적인 기관 설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법에서는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 및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근거 법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함

- 농정원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서 기관 설립을 규정하고 기관의 법적성격 및 관할업무, 예산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통합 전담기관은 수산분야 사업 직접수행 및 위탁·예산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사후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일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수산사업 운영에 질적·양적 내실화를 추구함
- 또한, 수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운영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산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신청 등 정책 수요자를 위한 창구 일원화로 절차 간소화, 양식 표준화 등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함

2 통합 전담기관 신설(안)

□ 설립 원칙

- (설립목적) 수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정책지원 및 전담분야 보조사업 수행 총괄
- (설립방법) 한국수산물,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다수의 수산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공공기관 형태의 기관 전환 또는 유사 사업 수행기관 통합으로 기관 설립에 따른 인력·비용 최소화 및 사업 연계성 증대
- (법적근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설립 근거 규정 마련
- (법적성격)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충족하면서, 정부보조사업 추진과 수산정책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운동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그 이상의 법적지위 확보
- (운영원칙) 해양수산부에서 기관운동을 총괄하되, 사업·예산 운영에 자율성 부여
- (예산확보) 해양수산부 정부출연금 및 정부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기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

□ 기관명칭

- 통합 전담기관의 명칭은 어업·양식업 등 생산중심의 수산업뿐만 아니라, 수산물·수산 식품의 유통, 가공, 소비, 개발 등 수산관련 전·후방산업을 모두 관할할 수 있도록 ‘(가칭)한국수산물산업진흥원’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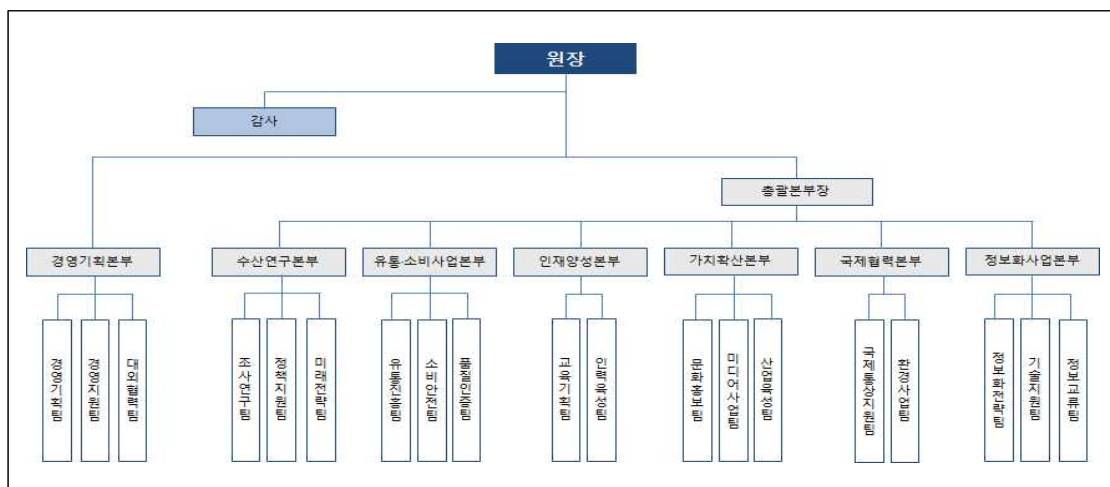
□ 주요 기능

- 「수산업 · 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중 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중점 사업수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을 포함함
- 10개 분야 전담기관 업무 중, 국제협력(한국원양산업협회) 및 위생 · 품질관리(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교육(한국해양연수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분야는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 공공 · 법인 기관이 존재함
- (가칭)한국수산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함
 - ① 수산분야 현안 연구 · 조사 사업 및 정책지원
 - ② 국제협력 분야 중 민간협력 사업 및 국제협력 지원
 - ③ 위생 · 품질관리 분야 중 대국민 대상 인증 · 홍보 사업
 - ④ 수산물 · 수산식품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 ⑤ 교육 분야 중 현장밀착형, 타 사업 연계형 교육사업 신규산업육성
 - ⑥ 수산분야 정보화 촉진 및 지식 · 정보교류 확산
 - ⑦ 수산분야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 홍보 강화
 - ⑧ 신규산업육성 · 지원

□ 조직 · 인력 구성

- 수산원 기능에 따라 본부 편성, 7개 본부 19개 팀으로 구성함
- 수산원 인력구성은 전담기관 지정기준(안)을 충족하도록 원장 이하 각 본부별 전문인력 1인 이상, 보조인력으로 구성함

 <그림 5-1> (가칭)한국수산산업진흥원 조직 구성(안)



VI. 정책제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시급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이 2015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신청 대상지정 기준, 운영방법 등 행정·절차상의 내용을 규정한 고시 제정이 필요함
- 전담기관 의 지정과 함께 미래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전담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한 법 규정 정비 외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관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현 수산사업 수행실태를 분석하여 사업 체계화 및 기관별 고유역할·기능부여, 목표설정, 전담 사업 분야 등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
 - 수산분야의 정책적 수요와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방향에 따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연계한 전담기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담기관 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관의 통합,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이 필요함
 - 전담기관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각종 시설·장비·인력 지원 등이 확충되어야 하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정규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함
 - 정책 사업의 특성 상, 정부-지자체 및 학계,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조직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아울러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문적 체계적인 수산정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통합 또는 통합 전담기관 신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사)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사)한국수산물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2015
- IDE,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조직설계 및 인력운영 효율화방안 도출 연구」, 2012
-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보조사업 평가」, 2015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중기 경영목표(2016~2020)」, 2015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6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 2016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5
-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2014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분야 재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보조사업 관리 효율화 방안」, 2013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재정립 및 발전방안 연구」, 2012
- 박석희, 「농식품행정체계 현황 분석과 개편방향 탐색」, 정부와 정책 제4권 제1호, 2011
- 오세홍 외, 「지역 R&D 전담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 이승우 외, 「어촌특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 방향」, KMI 현안분석 No.13, 2015
- 해양수산부, 「2016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 자료」, 2016
- 해양수산부, 「2016년도 보조사업시행지침서」, 2016
- 해양수산부, 「2016년도 성과계획서」, 2016
- 해양수산부, 「한 · 중 FTA 국내 보완대책 수립 개방화 시대의 수산업 미래 전략」, 2015

〈자료검색〉

<http://www.alio.go.kr>,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pfs.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

<http://www.at.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ekr.or.kr>,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fipa.or.kr>, 한국어촌어항협회
<http://www.fira.or.kr>,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http://www.ipet.re.kr>,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http://www.kfta.net>, 한국수산물무역협회
<http://www.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http://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www.korfish.or.kr>, 한국수산회
<http://www.kosta.org>, 한국원양산업협회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of.go.kr>, 해양수산부
<http://www.nf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ifs.go.kr>, 국립수산물과학원
<http://www.ofhi.go.kr>, 해양수산인재개발원
<http://www.seaman.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http://www.suhyup.co.kr>, 수산업협동조합



부록1 :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안)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9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담기관”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항제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3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수산업 관련 전문가로 수산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사업조사평가연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5조(지정 신청) ① 장관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2. 최근 3년간 수산업 관련 업무추진 실적 목록
3. 책임자 이력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수산관련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6.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6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및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업무 분야를 나누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장관이 세부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전담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일		설립근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3. 책임자 이력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

제 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			
① 법인명칭		② 사업자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소재지	(전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0호에 한함)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지정기간 : 20 . . ~ 20 . . .)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별지 제3호]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기 관 명(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2. 주요 실적

업 무 명	수행기간	의뢰처	비 고

- 주) ① 주요실적은 전담기관 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것 위주로 기재하되,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② 비고란은 주요실적의 완료, 진행여부 기재

3. 상시근무 인력현황

구분	성명	최종학위 (졸업년월)	전공분야	경력기간	자격증	비고
필수 인력						
지원 인력						

4. 시설확보 현황

주 소 지	면적(m ²)	자가·임대	비고



5. 장비보유 현황

장 비 명	단 위	보유수량	비고

6. 세부업무 추진계획

--

부록2 : 수산부문 세부사업 현황(2016)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수산분야)				세부사업
		소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수산부문	10	53	44	5	4	95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수산경영지원	(1) 수협경영정상화	수협경영정상화			수협경영정상화	
	(2) 수산경영안정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귀어귀촌활성화			귀어귀촌활성화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어업인복지지원			어업인복지지원	
	(3) 재해대책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	
		어선원및어선보험			어선원및어선보험	
		재해대책비			재해대책비	
	(4)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5) 수산경영안정	어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등록	
	(6) 재해대책	어업인재해공제			어업인재해공제	
	(7) 어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8) 수산경영안정(제주)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어업인교육훈련(제주)	
	(9) 어업경영자금(기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융자)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융자)	
		양식어업지원(융자)			양식어업지원(융자)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수산모태펀드출자			수산모태펀드출자	
		영어자금(융자)			영어자금(융자)	
	(10)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자유무역협정이행			자유무역협정이행	
	(11) 수산산업창업투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12)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수산정보화(정보화)			수산정보화(정보화)	
	(13)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 수산자원회복(일반)	유류피해지역지원			유류피해지역지원	
	(2) 어업질서 확립	어업협정이행			어업협정이행	
		어업정보통신지원			어업정보통신지원	
		어업지도관리			어업지도관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3) 수산자원회복(농특)	수산자원조사센터건립			수산자원조사센터건립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4) 내수면어업	내수면자원조성
	(5) 친환경어업(농특)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친환경 어구보급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 장비지원(지자체)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6) 자율관리어업육성	자율관리어업육성
	(7)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낙시산업 선진화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8)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어촌·어항 개발	(9) 친환경어업(에특)	노후어선 현대화
	(10) 수산자원회복(기금)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11) 어업지도정보화	연안어장 환경개선
	(1)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어업지도정보화(정보화)
	(2) 어업기반정비	어촌6차산업화지원
	(3)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어업기반정비
		국가어항관리
		국가어항
	(4)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가거도항복구
	(5) 어업기반정비(제주)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6)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어업기반정비(제주)
수산연구	(7)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국가어항(제주)
	(8)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제주)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정보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 수산연구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정보화)
	(3) 수산과학연구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 수산물유통개선(농특)	수입대체경비
		수산물시험연구(R&D)
		수산물생물방역 체계 구축(R&D)
	(2)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농특)	수산물 물류 표준화
	(3) 수산물가격안정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4)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지특)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5)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물이력제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기금·융자)	(1)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물 관측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2) 유통·가공시설(기금)	비축사업
	(3)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수산물자조금지원
	(1)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수산물수매지원(융자)
		우수수산물지원(융자)
	(2) 유통·가공시설(기금)	해외수산물시설투자(융자)
	(3)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원양협력	(1)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원양어업활성화
	(2)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	국제수산기수 협상 및 대응
		연안국과의 협력(ODA)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FMC)
식품산업육성	(3) 품목별경쟁력강화	원양어선현대화사업(융자)
	(1) 식품산업육성	천일염산업육성
	(2) 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3) 수산물가공(제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수산물품질관리	(4) 수산물가공(생활)	수산물가공산업육성(생활)
		수산물검역검사
	(1) 수출입수산물 안전성관리(농특)	수산물원산지관리
수산기술개발 정책연구	(1) 수산기술개발	Golden Seed 프로젝트(R&D)
수산물품질관리 정보화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자료 :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2016.

부록3: 주요 수산사업 참여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근거	사업성격	세부사업명	위임, 위탁 근거
준정부 기관 (6)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3조	어촌어항개발	어촌6차산업화지원	어촌·어항법 제56조
			수산자원관리·조성	내수면자원조성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어업환경개선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어업환경개선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 수원법	교육	수산물 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5, 시행령 제15조의2
			교육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교육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법	소비촉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소비촉진	우수수산물지원(옹자)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	R&D	수산물용화기술개발(R&D)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R&D	수산물산업 기술개발(R&D)	
기타공공 기관	한국수산업자 관리공단	수산업자관리법 제55조의2	수산자원관리·조성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수산업자관리법 제55조의2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과학 기술육성법 제8조	R&D	Golden Seed 프로젝트(R&D)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9조)
	한국어촌어항 협회	어촌·어항법 제57조	어촌어항개발 어업환경개선	어촌6차산업화지원 국가어항관리	어촌·어항법 제56조 및 제58조 어촌·어항법 제56조 및 제58조

구분	기관명	설립근거	사업성격	세부사업명	위임, 위탁 근거
(4)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 · 조성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어촌 · 어항법 제56조 및 제58조
			어촌어항개발	낙시산업 선진화	어촌 · 어항법 제56조 및 제58조 해양수산부사업지침
			조사 · 연구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어촌 · 어항법 제56조 및 제58조
			어업환경개선	연안어장 환경개선	어촌 · 어항법제56조 및 제58조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 시행령 제50조
			홍보	귀어귀촌활성화	어촌 · 어항법제56조 및 제58조 귀농어 · 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6조,시행령 제17조
	한국식품연구원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조사 · 연구	어촌6차산업화지원	
			조사 · 연구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조사 · 연구	수산물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산업관측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조사 · 연구	어업인복지지원	
			조사 · 연구	자유무역협정이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시행령 제20조
특수법인 (1)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산업육성	수산물페덱스출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특)한국원양 산업협회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	원양협력	원양어업활성화	
			원양협력	연안국과의 협력(ODA)	

구분	기연명	설립근거	사업성격	세부사업명	위임, 위탁 근거
사단법인 (7)	(사)한국수산회		원양협력	원양어선현대화사업(용자)	
			원양협력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소비촉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소비촉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안전·품질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	어업협정이행	
	한국수산업협회		어촌어항개발	자율관리어업육성	
			교육	수산업구시설 및 선박관리(R&D)	
			소비촉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국제협력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장수비용	공매납입금부과장수
			조사·연구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장수비용	수입관련 시스템 운영 및 국내 유통실태 조사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수산물수출전략 품목육성 (관상어산업 박람회·품평회)
	(사)한국관상어협회		산업육성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육성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사)해외어업협력센터		원양협력	연안국과의 협력(ODA)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재단법인 (1)	대한수산업경영관리사회		안전·품질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질병관리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수산자원관리·조성	내수면자원조성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한국생선회협회		안전·품질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농어촌희망재단		교육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물계인력 장학금 지원
	수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1013호	어촌어항개발	어촌6차산업화지원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소비촉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어촌·어항법 제56조

구분	기관명	설립근거	사업성격	세부사업명	위임, 위탁 근거
			원양협력	원양어선현대화사업(용자)	
			소비촉진	수산업기초 및 소비촉진제고	
			유통효율화	수산물 물류 표준화	해양수산물 사업지침
			유통효율화	소비자 분산 물류센터 지원	해양수산물 사업지침
			어업환경개선	어업정보통신지원	해양수산물 사업지침
			어촌어항개발	자율관리어업육성	
			기타	수협경영정상화	
			교육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양수산물 사업지침
			홍보	귀어귀촌활성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17조
			어민복지	어업인복지지원	해양수산물 사업지침
			어민복지	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어민복지	어선원및어선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어민복지	수산업융자금이차보전	
			어민복지	어업인재해공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민복지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용자)	
			어업환경개선	수산업비구입지원(용자)	
			어민복지	영여자금(용자)	
			유통효율화	수산물수매지원(용자)	
			유통효율화	산지 및 소비자 유통자금(용자)	
			유통효율화	수산물종합판매장확대지원	

주 : 업무 구분은 해양수산물 수산분야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자료 : 2016년 해양수산물 성과계획서,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 자료 참고 작성